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6 선고 2015가합56456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6. 8. 10. (피고 1, 2에 대하여)

2016. 10. 5. (피고 3, 4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16. 10.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313,031원 및 그 중 390,312,691원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5. 5.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5. 6. 11. 접수 제234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3. 3.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순차대로 '이 사건 ○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위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360,000,000원, 340,000,000원으로 변경, 306,000,000원으로 변경	대출보증	2013.3.27.-2014.3.26. (2015.3.26.로 변경, 2016.3.25.로 변경)	우리은행	2013.3.28.	400,000,000원
2	90,000,000원, 81,000,000원으로 변경	대출보증	2013.3.27.-2014.3.26. (2015.3.26.로 변경, 2016.3.25.로 변경)	우리은행	2013.3.28.	100,000,000원

2) 피고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3. 28. 400,000,000원 및 1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각 이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 등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 1) 피고 회사는 2015. 7. 21. 국세채납 등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2) 우리은행은 2015. 7. 31.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같은 달 29.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16.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이 사건 1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309,469,991원,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81,878,794원 합계 391,348,785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1 신용보증약정 보증료 환급금 400,304원, 이 사건 2 신용보증약정 보증료 환급금 635,790원을 회수하여 이를 대위변제금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 3) 원고가 회수한 위 금원에 대하여는 합계 340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 행위

- 1) 피고 B은 2015. 5. 18. 피고 C와 사이에 그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6. 11.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다.
- 3) 피고 B은 2015. 5. 28.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1.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390,313,031원(=대위변제금 390,312,691원(=391,348,785원-400,304원-635,790원)+3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90,312,69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어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B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여가 지난 2015. 7. 21.경 피고 회사는 국세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후 2015. 9. 16.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그 이행기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6, 9, 10, 12, 호증, 갑 제11, 12 내지 16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법원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1	시흥시 E에 있는 F 1층 제씨105호	190,000,000원	우리은행	391,348,785원	대출금 채무
2	위 F 1층 제씨106호	피고 C	170,000,000원	대여금 채무	
3	이 사건 1 부동산	1,152,890,000원	G	207,086,616원	물품대금 채무
4	이 사건 2 부동산	7,152,000원	영광군수협	376,000,000원	담보대출
5			우리은행	158,000,000원	보증채무
6	서울보증보험	60,016,000원	보증채무		
7	고창군수산업 협동조합	110,000,000원	담보대출		
합계	1,350,042,000원	1,472,451,401원			

3) 한편, 피고 B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5. 1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5. 6. 11.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으로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 채권자의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올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위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2015. 5. 28.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일인 2015. 5. 28. 이전에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2015. 7. 21.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으며,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 을마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2015. 5. 2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00,0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6. 10. 중도금 530,000,000원 및 잔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되, 중도금 중 376,000,000원은 근저당권자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D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인 2015. 5. 28. 70,000,000원, 2015. 6. 10. 90,000,000원, 2015. 6. 11. 64,000,000원, 2015. 9. 4. 10,000,000원, 2015. 9. 23. 50,000,000원, 2015. 9. 24. 40,000,000원 합계 32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D는 2015. 6.경부터 피고 B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 B이 2012. 10.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70,060,000원에 경락받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가 적정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 C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종원

판사조운정

판사윤재필

별지